

II.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영향

1. 개인퇴직계좌의 의의 및 특징

가. 개인퇴직계좌(이하 'IRA'이라 함)의 의의

IRA는 기존의 확정급여형(이하 'DC형'이라 함) 또는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라 함)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속 적립되어 근로자의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IRA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IRA는 개인형 IRA와 기업형 IRA로 구분되는데, 개인형 IRA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 설정이 가능하다.

〈표 II-1〉 개인형 IRA와 기업형 IRA의 비교

구분	개인형 IRA	기업형 IRA
가입대상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입조건	퇴직일시금의 80% 이상	전원가입
지급사유	가입자 자유의사	퇴직
연금지급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근로자 추가부담	불가능	가능

개인형 IRA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지 않고(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IRA로 이전을 요청하여 은퇴 시까지 퇴직금을 운용 관리할 수 있으며,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일시금의 80% 이상을 IR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과세이연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A 해지 시에 과세된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퇴직소득세 납부)한 이후 개인형 IRA에 입금할 때에는 세전금액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일시금 1억 원, 퇴직소득세 3백만 원, 실수령액 9천 7백만 원인 상태에서 퇴직일시금 전액을 개인형 IRA에 입금할 경우에는 실수령액 9천 7백만 원에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금액을 더한 1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 퇴직소득세 해당금액은 일단 자기자금으로 납부하고 환급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상시 근로자⁹⁾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IRA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IRA를 '기업형 IRA'라 부르고 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형 IRA에 가입할 수 없다. 기업형 IRA 가입가능여부를 점검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에는 1년 미만 근속자 등도 포함하여 10인 미만이 되어야 하지만 기업형 IRA에 가입시킬 때에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IRA와 구별하기 위하여 기업형 IRA라고 부르며 DB형·DC형과는 달리 퇴직연금 규약작성 및 신고의무 없이 간편하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기업형 IRA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DB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또는 입금한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퇴직급여제도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형이나 DC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업형 IRA를 설정하였다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통상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나. IRA의 성격

IRA를 퇴직연금(Private Pension)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연금(Annuity)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차이, 즉 기술적 차이, 운용특성(플랜 혹은 상품인지 여부)의 차이, 가입자 관여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즉 Pension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표 II-2〉 참조).

〈표 II-2〉 IRA와 개인연금 비교

구분	IRA	개인연금
기술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기초율 개방형 - 산정 시, 계산기초율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기초율 폐쇄형 - 산정 시, 계산기초율 확정
운용특성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랜(Plan) - 다양한 제도적 규정적용 - 별도의 퇴직연금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Product) - 세법에 근거조항 - 상품인가와 관련규정
가입자관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여정도가 매우 크다 - 관여정도가 크며 그 권리 역시 법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여정도가 매우 낮다 - 상품종류 선택 이외에는 가입자 관여정도 미미

첫째, 기술적 차이면에서 볼 때 부담금 산출의 토대가 되는 기초율(임금상승률, 이자율, 사망률 등)이 개방형이면 Pension, 폐쇄형이면 Annuity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임금상승률, 종업원의 수 및 연령, 사망률이 수시로 변하며 임금상승률 등이 그대로 부담금 산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율이 '개방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차이면에서 볼 때 IRA는 Pension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상품개발 당시의 사망률, 이자율 등이 고정되어 보험료가 산출된다는 점에서 기초율이 '폐쇄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플랜인지 아니면 상품인지의 차이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Pension은 플랜, Annuity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플랜은 설립, 운영, 지급에 이르는 각 단계에 다양한 제도적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위해 보통 독립된 근거를 지니게 된다. 이에 반해 상품은 독립된 근거법 없이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거나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세법에 근거조항을 두기도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차원에서 상품인가와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를 두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은 독립된 법규정하에서 다양한 제도적 규정의 적용을 받은 IRA는 플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플랜이나 상품이나의 차이면에서 볼 때 개인형 퇴직연금은 상품이 아닌 ‘플랜’이다.

셋째, 가입자 관여 정도의 차이면에서 볼 때 Pension은 가입자인 기업이나 근로자의 관여 정도가 매우 크며, 그 권리 역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Annuity는 가입자의 관여 정도가 상품종류를 선택할 때 이외에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및 근로자의 관여 정도가 높은 IRA는 퇴직연금인 Pension이라 할 수 있다. IRA의 종류에 따라 전통적 퇴직연금의 영역에 가까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연금의 영역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퇴직연금의 통산기능을 수행하는 IRA는 퇴직연금에 가깝고, 자영업자의 은퇴자금 마련이나 중소기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적용 제외해주는 IRA는 개인연금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IRA 역시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종류별로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기업형 IRA는 퇴직연금에, 개인형 IRA는 개인연금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 IRA의 중요성

우리나라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취업 근로자 대비 32.8%로 OECD 국가 평균인 16%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OECD 국가에 비해 자영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금융위기에 따른 근로자의 명예퇴직 증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 증가에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장치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영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IRA 제도는 자영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간정산, 이직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노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RA 제도의 유용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평균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근로자가 IRA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직장이동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연속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IRA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보다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떤 근로자가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10년, 3년, 5년, 4년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을 경우 IRA를 활용했을 때와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현금흐름차이 결과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월급여 350만 원에 임금상승률 6%를 가정하고 10년 근속 후 직장을 이전하여 각각 3년, 3년, 4년을 기간으로 이직한 경우를 분석하여 IRA를 활용한 자산운용과 그렇지 않은 자산운용의 결과 비교는 다음 <표 II-3>, <표 II-4>와 같다.

<표 II-3> 및 <표 II-4>는 IRA를 유지할 경우 최초 10년 근속 이후 이직하여 3년 근속, 다시 이직하여 3년 근속, 마지막으로 최종직장에서 4년을 근속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계산한 것이다. 세제는 모두 현행세제를 반영하고 세율은 2009년 세율을 사용하였으며 운용수익은 모두 6%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RA를 활용하여 은퇴를 준비할 경우 수익률 측면에서 약 800만 원, 즉 4%의 이익이 더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을 IRA에서 운용할 경우 세제상의 이점으로 인하여 운용수익의 비과세와 퇴직소득산정 시 IRA 운영기간을 모두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퇴직소득세가 한 번만 부과된다.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IRA의 경우 수수료가 없거나 대단히 저렴하므로 1%의 추가이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3〉 현금흐름 IRA를 유지하여 퇴직한 경우

10년 근속	3년 근무	3년 근무	4년 근속 후 은퇴	총계(만 원)
6,268	IRA에서 운용			11,225
-	2,528	IRA에서 운용		3,801
-	-	3,202	IRA에서 운용	4,043
-	-	-	5,717	5,717
합계				24,786
퇴직소득세				1,094
순자산				23,692

〈표 II-4〉 현금흐름 IRA를 유지하지 않고 인출한 경우

10년 근속	3년 근무	3년 근무	4년 근속 후 은퇴	총계(만 원)
6,268	일반금융상품 운용			11,225
퇴직소득세				268
이자소득세				648
-	2,528	일반금융상품 운용		3,801
퇴직소득세				114
이자소득세				152
-		3,202	IRA에서 운용	4,043
퇴직소득세				147
이자소득세				78
-			5,717	5,717
퇴직소득세				266
순자산				22,804

다음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IRA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형태는 ①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유치, ②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자금 유치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주로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여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유치(가입 유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DB형 및 DC형로 적립된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여부가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립된 퇴직자금 규모가 매우 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일시적 목돈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IRA 제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라. IRA의 특징

IRA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시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시금을 적립해도 되고 일시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IRA의 설정을 맡겨 일시금이 바로 계좌로 적립되도록 할 수 있다. IRA는 DB형 및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된다. IRA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일대일 계약이므로 가입자인 근로자는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을 두 번 체결하여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도 단체계약으로 일괄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개별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IRA는 근로자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영관리 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운용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산관리 수수료는 규약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IRA의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자산 중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은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적립금 운용 지시권을 행사하므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적립금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IRA는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즉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IRA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세제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IRA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다양한 가입자가 예상되므로 절세효과 등 IRA에 특화된 교육내용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교육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IRA의 경우 가입자가 일반개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온라인 교육도 참여율이 저조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 서면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면교육도 IRA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다.

2.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배경 및 내용

가.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배경

국내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취업근로자 대비 32.8%로 OECD국가 평균인 16%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 근속기간(2007년 기준 5.9년)이 짧으며 DB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직 후 재입사한 사업장이 퇴직금, DB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통산이 불가능하여 퇴직 시 소액일시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퇴직금 또는 DB형 사업장에 이직하는 경우도 통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RA 가입자로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직자 등을 포함하고 관련규정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즉 기존의 IRA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영인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2층 노후소득보장 장치인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직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부담금의 추가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형 IRA의 경우 전부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확대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24조제2항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자영업자, DB형 퇴직연금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대통령령의 초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는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③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⑤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⑥ 그 밖의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과 같이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표 II-5〉 IRA의 설정 및 운영 규정

현행	개정안
제25조(IRA의 설정 및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IRA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4조(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및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동일 2.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즉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거주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안에서는 가입대상을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화물기사, 택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연예산업 종사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추가납부 허용

기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경우에만 추가납부가 가능하였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24조에서는 퇴직급여 일시금 외에 가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표 II-6〉 추가납입 관련 규정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및 운영 등) ⑥ 가입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⑦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중인 자산으로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자산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개인형 퇴직연금 설정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4.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이처럼 부담금 추가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이 DB형, DC형과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주요한 한 형태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3) 설정절차 완화

호주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자 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퇴시점까지 동 계좌에서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은 공적연금까지 IRA 형태로 일원화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운영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7〉 설정절차 관련 규정

현행	개정안
<p>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p> <p>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의 의한 IRA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IRA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p> <p>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p>	<p>제25조(개인형 퇴직연금 설정 특례)</p> <p>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선정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할 것 7.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8. 사용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이처럼 호주 및 칠레 등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IRA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사업의 영세성, 잦은 직장

이동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 전원 동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설정 절차가 오히려 더 어려워 활용도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25조제1항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요구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 근로자의 의무가입규제 해소로 사용자는 쉽게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퇴직급여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4) 가입 연속성 제고

평균근속기간이 약 6년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직장이동에도 퇴직연金の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이직 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연금수급개시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을 보존하도록 규정화하였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16조제4항).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55세 이후의 급여수령, DC형으로의 급여이전, DC형의 중도인출사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이직 시 퇴직연금의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65세 이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자영인 등이 가입하는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제도를 맡아서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로 강제 이전하여 통산시키고 있다. 다만 ① 개인형 확정기여형의 가입자격이 없는 경우(예: 공무원), ② 60세 미만인 경우, ③ 적립금규모가 50만 엔 이하 혹은 통산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 경우, ④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인 경우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는 탈퇴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표 II-8〉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관련

개정안	시행령(안)
제16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지급 절차) ④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가입자는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4조(이직 시 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① 법 제17조제4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 이직하는 직장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급여를 이전하는 경우 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①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적으로 과세이연하려고 할 때, ②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폐지하여 급여를 수령해야 하나 급여수급자가 당장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없고 과세이연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 ③ 연금가입자가 과세이연을 유지한 채 투자형태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이전하게 된다. 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IRA로 이전한 급여는 59.5세 이전에 인출(조기인출) 시 벌금을 부과하며 70.5세부터는 최소인출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3.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

가. 추정단계 및 제가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규

모 전망을 위한 프로세스는 크게 근로자 및 자영업자수(1단계), 평균임금 및 근속년수, 소득추정(2단계), 퇴직금액, 전액비율추정(3단계), 퇴직연금시장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추정(4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II-9〉참조).

〈표 II-9〉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 관련 제가정

추정단계	세부내용	제가정	
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 추정	근로자	• 장래추계인구(2011~30년)	• kosis국가통계포털 이용
		• 경제활동인구(15~59세) - 장래추계인구×경제활동인구비율	• 총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2000~10년)
		• 5인 이상 근로자비율	• 10년간 근로자비율 평균치
	자영업자	• 장래추계인구(2011~30년)	• kosis국가통계포털 이용 - 10년간 총인구 대비 자영업자 평균 이용
평균임금/근속년수/소득추정	근로자	• 사업장 평균 임금율	• 10년간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상승률(노동부)
		• 평균근속년수	• 5인 이상 사업장 근속년수 평균치
	자영업자	• 자영업자소득	• 한국은행 과거 5개년 데이터 - 평균소득증가율 산정 등
퇴직금액, 연금전환비율추정	근로자	• 퇴직금액 추정	-
		• 최근 가입추세, 증가율 추이반영	• 시나리오별 가입률 설정
	자영업자	• 퇴직금액 추정급여 및 전환비율	• 연소득 × 1/12로 가정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
연금시장 전망	• 시나리오별 퇴직연금 시장규모 전망	• 유형별 적립비율 및 추세 고려 - 자영업자만 분석대상포함	
	• 시나리오별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규모 전망		

첫째, 퇴직연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한정하되, 사업장 규모를 단일화하여 근로자를 추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한 장래추계인구 데이터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15~59세 경제활동인구로 설정하였다.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비율과 경제활동인구 대비 5인 이상 근로자 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장래인구 추계치에 대입하여 역산함으로써 장래 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추정과정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율은 지난 10년간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당분간은 현재의 변화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장래추계인구 × 15~59세 경제활동인구비율 × 5인 이상 근로자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영업자 수의 장래추계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과거 10년간 총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을 고려하였다.

둘째, 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률은 GDP 성장률을 대응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10년까지의 임금상승률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는 과거 10년의 평균근속기간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영업자소득의 장래추계는 자료의 한계 상 한국은행의 과거 5년간 자영업자 소득추이 및 소득증가율을 통해 추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정도를 대변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과거의 가입률 추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향 등을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영업자의 퇴직급여는 자영업자수 총소득의 1/12로 가정하였으며 이 부분이 「근퇴법」 개정으로 전환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에 이렇다 할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없어 가입의 니즈가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퇴직연금시장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전망은 크게 「근퇴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근퇴법」 개정으로 신규 자영업자의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특수직역연금가입자, 근로자추가부담예상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법적·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 정도 등은 자의성에 따른 분석의 오류를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나.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규모 전망 결과

1) 퇴직연금 시장규모 전망 결과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를 전망하여 보면 2011년 32조 5,672억 원, 2015년에 69조 8,058억 원, 2020년에 142조 3,5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2011년에 34조 9,194억 원, 2015년 73조 6,184억 원, 2020년에는 148조 6,04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10〉 퇴직연금시장의 규모 전망(2011~30년)

(단위: 만 원)

연도	근로자 대상 시장규모 전망(①)	자영업자대상 시장규모 전망(②)	전체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 ① + ②)
2011	3,256,728,985	235,215,469	3,491,944,454
2012	4,048,598,931	235,998,423	4,284,597,353
2013	4,928,213,486	284,244,815	5,212,458,301
2014	5,902,918,951	332,678,684	6,235,597,636
2015	6,980,588,369	381,256,951	7,361,845,320
2016	8,169,637,718	429,936,690	8,599,574,408
2017	9,479,205,108	478,682,643	9,957,887,751
2018	10,919,257,595	527,469,216	11,446,726,810
2019	12,500,808,162	576,286,464	13,077,094,625
2020	14,235,335,133	625,108,752	14,860,443,885
2021	16,133,909,604	673,859,480	16,807,769,084
2022	18,209,924,518	722,530,064	18,932,454,582
2023	20,478,873,182	771,154,001	21,250,027,182
2024	22,955,786,287	819,701,906	23,775,488,193
2025	25,656,435,856	868,134,759	26,524,570,615
2026	28,597,418,464	916,407,203	29,513,825,667
2027	31,795,984,674	964,462,479	32,760,447,153
2028	35,269,832,403	1,012,228,218	36,282,060,621
2029	39,037,273,783	1,059,624,270	40,096,898,053
2030	43,117,432,369	1,106,569,538	44,224,001,908

주: 1) 근로자대상 시장규모 전망은 현행기준(「근퇴법」 개정 미고려)상의 전망임.

2) 전체 시장규모 전망은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자영업자도 포함한 전망임.

특히 자영업자 가입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퇴직연금시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2011년에 2조 3,521억 원, 2015년에 3조 8,125억 원, 2020년에는 6조 2,5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규모 전망 결과

현행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규모를 전망하는 경우, 시나리오 I (유형별 적립금비중)에서는 2011년에 4조 383억 원, 2015년에 8조 6,559억 원, 2020년에 17조 6,518억 원, 2025년에 31조 8,139억 원, 2030년에 53조 4,6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11〉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2011~30년) (단위: 만 원)

연도	현행기준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근로자)		전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근로자 + 자영업자)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2011	403,834,394	534,103,554	639,049,863	769,319,022
2012	502,026,267	663,970,225	738,024,690	899,968,647
2013	611,098,472	808,227,012	895,343,288	1,092,471,827
2014	731,961,950	968,078,708	1,064,640,634	1,300,757,392
2015	865,592,958	1,144,816,492	1,246,849,909	1,526,073,444
2016	1,013,035,077	1,339,820,586	1,442,971,767	1,769,757,276
2017	1,175,421,433	1,554,589,638	1,654,104,076	2,033,272,281
2018	1,353,987,942	1,790,758,246	1,881,457,157	2,318,227,461
2019	1,550,100,212	2,050,132,538	2,126,386,676	2,626,419,002
2020	1,765,181,557	2,334,594,962	2,390,290,308	2,959,703,714
2021	2,000,604,791	2,645,961,175	2,674,464,271	3,319,820,655
2022	2,258,030,640	2,986,427,621	2,980,560,704	3,708,957,685
2023	2,539,380,275	3,358,535,202	3,310,534,275	4,129,689,202
2024	2,846,517,500	3,764,748,951	3,666,219,406	4,584,450,857
2025	3,181,398,046	4,207,655,480	4,049,532,805	5,075,790,240
2026	3,546,079,889	4,689,976,628	4,462,487,093	5,606,383,831
2027	3,942,702,100	5,214,541,486	4,907,164,579	6,179,003,966
2028	4,373,459,218	5,784,252,514	5,385,687,436	6,796,480,732
2029	4,840,621,949	6,402,112,900	5,900,246,219	7,461,737,170
2030	5,346,561,614	7,071,258,909	6,453,131,152	8,177,828,447

주: 1) 시나리오 I 은 유형별 적립금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전망치임.

2) 시나리오 II 은 유형별 적립금비중과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전망치임.

이에 반해 시나리오 II(유형별적립비중+추세)에서는 2011년에 5조 3,410억 원, 2015년에 11조 4,481억 원, 2020년에 23조 3,459억 원, 2025년에 42조 765억 원, 2030년에 70조 7,12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였을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를 시나리오 I에 의해 전망하는 경우 시나리오 I에서는 2011년에 6조 3,904억 원, 2015년에 12조 4,684억 원, 2020년에 23조 9,020억 원, 2025년에 40조 4,953억 원, 2030년에 64조 5,313억 원에 이를 것을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시나리오 II에 의해 전망하는 경우 2011년에 7조 6,931억 원, 2015년에 15조 2,607억 원, 2020년에 29조 5,970억 원, 2025년에 50조 7,579억 원, 2030년에 81조 7,78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시장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치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에 입각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상되는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개인형 연금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종료 등으로 인해 2011년 말 50조 원 수준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퇴직연금 세제개편안¹⁰⁾」이 퇴직연금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RA 점유율의 급속한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근퇴법」 개정안 및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DB형 도입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퇴직연금 의무 적립률 현행 60%에서 상향조정, 퇴직급여부채 변동성 증가 부담 등),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의 적립수단, 노후자금 운용수단 등으로 IRA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범위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10)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300만 원→400만 원),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45%→40%) 등이다.

4. 개인형 퇴직연금의 도입 영향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의 영향(기대효과)은 크게 가입자, 정부, 사업자(금융회사 또는 금융산업)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II-12〉 개인형 퇴직연금도입의 제반 영향

가입자	정부	사업자 또는 금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 강화 • 안정적인 노후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부담의 완화 • 고령화리스크 대응 • 연금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 은퇴관리자 역할증대 • 금융산업 성장전인

먼저 가입자의 측면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직장이동 시 통산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의 수급권 및 운용의 연속성 강화,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와 재정부담 완화, 사업자 또는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의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은퇴관리자로서의 역할증대, 금융산업의 성장전인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노후보장적 측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IRA를 가장 단순하며 이동성이 높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의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과 달리 근로자의 전원 동의가 아닌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요구가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 근로자의 의무가입 규제를 해소하여 사용자가 쉽게 개인형 퇴직금을 활용한 퇴직급여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연금

수급개시 연령(55세)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 급여를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전하도록 한 규정 등은 직장이동 시의 퇴직연금 연속성이 보다 강화되고, 근로자의 충분한 노후재원 확보 가능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가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직 시 계약해지 없이 노후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고령화 정책적 측면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비중의 증대는 전반적으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고령화 리스크를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내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대상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국내 자영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다. 금융산업 역할 측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성격을 지닌 은퇴준비제도라는 점에서 개인연금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출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간의 통산성(이관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급옵션 설정과 지급보증 설계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제의 도입은 은퇴관리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인하여 연금자산 축적부터 연금지급 개시에 이르는 종합적인 은퇴관련 서비스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운영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은퇴관련 서비스의 출현으로 이어져 은퇴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은퇴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은퇴관련 서비스 면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은퇴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간정산 시, 이직 시의 퇴직자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해왔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중간정산 및 이직에 따른 퇴직자금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저축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적인 자본이 축적되고 이 자본은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직역 연금가입자 등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축적되는 안정적인 자금의 규모는 예상외로 크고,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퇴직자산의 축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이 가시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